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97호
2. 발 의 자 : 장 인 흥 의원
3. 발의일자 : 2020. 5. 22.
4. 회부일자 : 2020. 5. 29.

## II . 제안이유

-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소셜 미디어 등의 이용 증가로 실내 생활 위주의 개인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III . 주요내용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2.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3.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4.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장인홍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97호로 발의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1)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sup>3)</sup> 단체를 말합니다.
- 이와 같은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학교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가족부 고시, 2005.4.8. 제정」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업무 경감 정책에 따라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인정 종료’를 예고하고<sup>4)</sup>, 2019년에는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제외<sup>5)</sup> 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는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청소년단체들이 학교를 기반으로 활동해 왔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단체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 업무로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활동으로 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청소년단체에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예산을 2018년 대비 약 200% 증액하였으며, 2020년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운영비를 3억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바,

동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단체 운영 방식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청소년단체가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사업 예산 현황 (2018년~2020년)**

사업명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계	547,800	202,950	97,500
청소년단체 <sup>6)</sup>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	198,000	198,750	97,500
학교자율청소년단체 운영비	350,000	-	-
청소년단체활성화 지원회의	2,800	4,200	-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공고」(2018년 7월 31일)

5) 서울특별시교육청(2019.2.). ‘청소년단체활동 운영 안내’

6) 서울시교육청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15개 단체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규정으로 안 제 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칙규정으로는 안 제6조에서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예산 등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은 이미 「청소년 기본법」 제 29조<sup>7)</sup>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서울본부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세계화교육문화재단GENY단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한국스카우트서울남부연맹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한국시민자원봉사회청소년봉사단연맹	한국119소년단연맹
피라미타청소년연합회	국제교유문화진흥원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서울특별시4-H본부
한국술사랑청소년단	

7)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48조8)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학교교육과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3)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정책 기

---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청소년 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계획」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해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sup>9)</sup>,

이미 서울시는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다양한 청소년시설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1〕).

- 따라서 동 조항에서 청소년단체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지역 중심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995, 2020.05.29.).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 청소년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  
○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확대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청소년단체 사업 다양화  
○ 청소년단체 전문성 확보 및 일선 학교와의 연계 추진  
○ 지역내 협력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획득 역량 배양

[첨부자료 1] 서울시 청소년시설 현황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려사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주말활동 지원	여의대방로20길 33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통일로 684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봉은사로 114길 43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난곡로24가길 54	
중랑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송림길 15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만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	통일로 92길 37-6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	도당로 17길34 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위기(가출)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	한천로 140길 5-24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가좌로134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삼각로 188 송림빌딩 5층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우장산로 117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구천면로 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면목로 23길 2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	여의대방로 20길 33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	통일로 684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성문화센터, 쉼터 등 포함)	봉은사로114길 43	